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태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·육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특히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(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)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숲 규모를 정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